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분석

전병욱(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조교수

(bvwjun@uos.ac.kr)

최보람(주저자)

서울시립대학교 박사과정

(born222@uos.ac.kr)

본 연구는 Scholes et al.(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의 가능성을 주택관련 저축 지원규정, 주택관련 차입금 지원규정 및 연금상품 지원규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choles et al.(2009)에 의하면 시장마찰(market frictions)과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를 통해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득공제를 통한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충분한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세제지원이 당초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당초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세제지원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무위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현행 세제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가능한 대안들은 아래와 같다. 첫째,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신 Phase-Out 규정이나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이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둘째, 납세자의 조세혜택이 한계세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해지추징세액과 같은 세법상 규제는 한계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규제도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셋째, 주택보유자이면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무위험차익을 크게 제공할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또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Phase-Out 규정을 적용하여 동(同)무위험차익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넷째,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절세효과는 제한적인 월세 소득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비율을 높이고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하고 금융상품 세제지원에 대한 합산한도를 소득공제별 개별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2012년까지 폐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신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축소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同)소득공제의 요건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금융상품 세제지원에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조세혜택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금융상품 세제지원,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 시장마찰, 세법상 규제

1. 서론

정부는 2009년말의 세법개정을 통해 중산서민층

의 재산형성에 대한 지원은 지속하되 주택 마련과 직접 관련없는 저축에 대한 비과세·공제의 이중적 혜택을 합리적 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지원을 <표 1>과 같이 조정했고, 이

〈표 1〉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지원 조정 (2009년말 세법 개정)

종전	개정내용
장기주택마련저축 과세특례	일몰 연장 및 감면대상 등 조정
○ 이자소득 비과세	○ 左同
○ 불입금액 40% 소득공제 (근로자) - 연간 300만원 한도	○ 소득공제 폐지 - 단, 2009년말까지 가입자 중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한하여 2012년 불입분까지 공제 허용
○ 가입요건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가입요건 완화 - 左同 -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1주택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 일몰기한: 2009.12.	○ 일몰연장: 2012.12.

* 단, 기준시가 5천만원 이하 주택의 경우 국민주택규모요건 배제

에 따라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한 세제혜택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장기주택마련저축과 같은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의료비나 교육비 등에 대한 일반적인 소득공제와는 다르게 원본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또한, 동(同)소득공제도 일반적인 소득공제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의 초과누진세율 구조에서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가 더 큰 조세혜택을 받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주택관련 저축, 주택관련 차입금 및 연금저축의 세 가지로 구분한 후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가 이러한 금융상품 소득공제를 통해 실현가능한지 여부를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¹⁾

Scholes et al.(2009)의 논의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시장마찰(market frictions)과 세법상 규제

(tax rule restrictions) 때문에 조세차익거래는 발생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연구의 이론적 분석의 결과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소득공제를 통해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특히 한계세율이 높은 납세자일수록 조세차익거래의 기회를 더욱 크게 얻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혜택의 제공, 불입금액에 따른 세법상 규제, 차입금에 대한 세법상 규제의 미비 등과 같은 현행 세법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후의 세법개정시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제제지원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이하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먼저 제2장은 금융상품 소득공제에 대한 세법 규정과 그 특징들을 정리하고, 제3장은 동(同)금융상품들에 대하여 Scholes et al.(2009)의 논의를 적용하였으며, 제4장은 각 금융상품 소득공제에서 조세차익거

1) 그 밖에 장기주택마련펀드나 장기주식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도 있지만 펀드의 특성상 원본의 손실이 발생해서 (즉, 납세자가 투자위험을 부담해서) 차익거래의 요건인 무위험투자(순투자액=0)를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래의 발생가능성을 이론적으로 분석하였다. 제5장은 이론적 분석의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세법상의 금융상품 세제지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했고, 마지막으로 제6장은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였다.

II.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본 연구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과 이를 이용한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먼저 이 번 장에서는 현행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규정을 주택관련 저축 지원규정(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관련 차입금 지원규정(장기주택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및 월세 소득공제²⁾) 및 연금상품 지원규정(연금저축 소득공제)으로 구분하여 정리하였다.

2.1 장기주택마련저축

정부는 2009.8.25.자 세제개편안에서 장기주택

마련저축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일몰기한을 2012년까지 3년 연장하고, 소득공제는 2010년 불입분부터 폐지한다고 발표하였다.³⁾ 그러나, 실제 2009년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시에서는 <표 1>과 같이 동(同)저축의 가입 일몰기한을 2012년말까지 3년간 연장하고 기존 가입자 중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⁴⁾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3년간 연장하였다.⁵⁾ 구체적으로, 2009년말 세법개정 이전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은 만 18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가입 당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이거나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에 의한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한 채만을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이었고 각 가입자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MIN(불입금액의 40%, 300만원)을 소득공제할 수 있었으나, 동(同)세법 개정 이후에는 소득공제의 대상자가 연간 총급여가 8,800만원 이하인 소득자로 제한되었다(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이러한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불입금액의 한도는 750만원(300만원*40%)이지만 동(同)저축은 분기당 300만원을 한도로 연간 1,2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닌 연간 750만원 초과금액은 이자

- 2) 월세 소득공제는 원본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보다는 일반적인 소득공제로 볼 수 있으나, 동(同) 소득공제의 한도가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3) 동(同)세제개편안에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폐지 사유는 <표 2>와 같다.

<표 2>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폐지 사유 (2009.8.25.자 세제개편안)

- | |
|--|
| ① 저축명칭과는 달리 주택마련과는 무관한 일반 금융상품임에도 이자소득 비과세 및 소득공제를 중복적용하고 있어 과도한 지원
② 총급여 수준에 관계없이 가입이 가능하며, 저축가입 당시 요건을 기준으로 세제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고소득자 등도 수혜(취득 당시 3억원 이하의 주택 보유자가 이후 주택가격이 대폭 상승하여도 계속 소득공제 혜택을 받음)
③ 중산·서민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2010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 불입액, 월세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 |
|--|
- 4) 2009.9.15.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에 의하면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자(총 140만명) 중 총급여 8,800만원 이하는 132만명(94.3%)이었다.
5) 2009.8.25.자 세제개편안과 다른 세법개정안은 2009.9.15.자 기획재정부 보도자료("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에서 이미 발표되었다.

〈표 3〉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연간 불입금액에 따른 조세혜택의 구분

연간 불입금액	소득공제	이자소득세
750만원 이하	불입금액×40%	비과세
750만원 초과 1,200만원 이하*	300만원	비과세

* 1,200만원 초과 불입 불가

〈표 4〉 장기주택마련저축의 해지에 대한 세법상 규제 (tax rule restrictions)

저축기간	해지추징세액	이자소득세
1년 이하	불입금액의 8% (연 60만원 한도)	과세
1년 초과 5년 이하	불입금액의 4% (연 30만원 한도)	과세
5년 초과 7년 이하	없음	과세
7년 초과	없음	비과세

소득 비과세를 목적으로 불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근로자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후 〈표 3〉의 세제혜택만 얻은 후에 동(同)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저축기간에 따라 〈표 4〉와 같이 해지추징세액과 이자소득세를 부과하는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를 시행하고 있다. 즉, 해지추징세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가입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불입금액의 4%로 (연간 30만원 한도) 하되, 가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

는 불입금액의 8%로 (연간 60만원 한도) 한다고 규정하여 1년 이내의 단기해약자에게는 더욱 중과하고 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가입일로부터 7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에는 저축기간의 이자소득에 대하여 과세하고 있다.

2.2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외에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저축상품으로는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⁶⁾

〈표 5〉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비교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대상	무주택 세대주	연령 및 자격 제한 없음
소득공제대상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주	과세연도 중 무주택세대주*
저축금액	월 2만원~10만원	월 2만원~50만원
소득공제한도	연 48만원(연간 불입액 120만원×40%)	左同
세법상 규제	없음	불입금액의 6%

*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세연도 이후에도 소득공제 가능

6)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

청약저축은 2009년말 세법개정 이전부터 시행했고 무주택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10년에 신설되었고⁷⁾ 가입자격에 제한이 없다. 그러나, 두 저축 모두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10만원 이하의 매월 납입액의 합계(연간 120만원 한도)의 40%만을 소득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소득공제만 적용받은 후에 동(同)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유사하게 동(同)저축의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거나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에는 불입금액의 6%를 추징하는 세법상 규제를 시행하고 있다.

2.3 주택관련 차입금 및 월세 소득공제

주택관련 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로는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다.⁸⁾ 또한, 이와 함께 2010년에는 월세소득공제가⁹⁾ 신설되어 특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¹⁰⁾ 월세금액의 40%를 연간 300만원 한도로 공제하고 있다. 동(同)소득공제들을 정리하면 <표 6>과 같으며, 이들에게 적용하는 별도의 세법상 규제는 없다.

또한, 이상에서 논의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㉑),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㉒),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㉓)는 연 300만원의 합산한도가 적용되고, 동(同)합산소득공제액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표 6> 주택관련 차입금 및 월세 소득공제

	주택임차차입금 및 월세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소득공제대상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세대주로서 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 (일용근로자는 제외)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액	원리금 상환액(또는 월세금액)의 40%	이자상환액의 100%
소득공제한도	연 300만원	연 1,000만원 (단,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만원)

7) 그러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은 2009년 불입분부터 소급하여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8) 주택관련 공제는 1994년 이전에는 무주택근로자에 대하여 연 100만원을 급여액에서 정액공제하였으나, 주택마련을 위해 노력(저축, 차입금 상환)하는 정도에 따라 주택자금을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전환된 것이다. 2000.12.29.자 법 개정시 중산층 및 서민층의 내집 마련에 대한 세제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주택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주택건설업계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주택자금공제대상으로 신설하였으며, 공제한도액도 종전의 연 18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2002.12.18.자 법 개정시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거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공제 한도액을 연 300만원에서 연 6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 2003.12.30.자 법 개정시에는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의 내집마련 및 장기주택금융 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주택자금공제 한도액을 연 600만원에서 연 1,000만원으로 대폭 확대하였다(www.samilli.com에서 인용).

9) 소득세법 제52조 및 동법시행령 제112조

10) 구체적으로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고 ②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이며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임차인이라야 한다.

〈표 7〉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 규정의 합산 한도

합산 소득공제액 = MIN(MIN(㉑+㉒+㉓, 연 300만원)+㉔, 연 1,000만원)
단, ㉑: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액, ㉒: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액, ㉓: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소득공제액, 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액

상환액의 소득공제(㉔)는 다시 합산하여 연 1,000만원의¹¹⁾ 합산한도가 적용된다.

2.4 연금상품 소득공제¹²⁾

마지막으로, 연금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축 납입계약기간 만료 후 연금 형태로 지급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저축(이하 "연금저축")에 가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저축 납입액과 3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다.

연금저축의 가입요건의 제한은 없고, 동(同)소득공제는 근로자만이 아닌 모든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동(同)소득공제에 대한 세법상 규제로는 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입액의 2%를 해지가산세로 추징하고¹³⁾ ②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경과 전에 해지하거나 경과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¹⁴⁾ 과세하는 것이다.¹⁵⁾ 이상에서 논의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항목들을 요약하면 〈표 8〉과 같다. 주택저당차입금의

〈표 8〉 금융상품 세제지원 요약

소득공제 항목	공제대상자	공제비율	공제한도	세법상 규제
장기주택마련저축	법정근로자	40%	300만원* ^A	해지추징세액 및 이차소득세
청약저축	무주택근로자	40%	48만원* ^A	없음
주택청약종합저축	무주택근로자	40%	48만원* ^A	추징세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무주택 법정근로자	40%	300만원* ^A	없음
월세	무주택 법정근로자	40%	300만원* ^A	없음
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유주택 법정근로자	100%	1,000만원* ^B	없음
연금저축	거주자	100%	300만원	해지가산세 및 기타소득세

*^A 300만원의 합산한도 적용

*^B 전단계의 공제액과 합산하여 1,000만원의 합산한도 적용

- 11) 〈표 6〉과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이 30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 1,500만원
- 12) 이 밖에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으나 폐지 후 10년이 경과한 상환시기 때문에 (2000.12.31 까지 가입 가능) 본 연구의 분석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 13) 다만, 저축자의 사망 등으로 인한 경우에는 해지가산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 14) 기타소득 = 해지시 지급받는 금액 또는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금액 × [1 - (소득공제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불입한 금액의 누계액+총지급액 또는 지급예상액)]
- 15) 또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은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기 때문에 동(同)규제는 연금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만 적용받고 동(同)저축을 해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의 세금부담이 연금소득보다 크기 때문에 이것을 세법상 규제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자상환액과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100%인 반면 나머지 금융상품들에 대한 소득공제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40%이고 합산한도도 적용하여 조세혜택이 비교적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세법상 규제는 저축상품 위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해지시 원리금에서 차감할 수 있는 정수상 편리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III. 조세차익거래에 대한 분석

이번 장에서는 전술한 우리나라의 금융상품 세제 지원을 대상으로 Scholes et al.(2009)이 논의한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의 실현가능성을 분석하기로 한다.

3.1 조세의 고객효과

조세의 고객효과(tax clienteles)는 납세자의 속성(한계세율)이 과세대상자산과 조세혜택자산을 통한 세후수익률에 영향을 미쳐서 각 자산에 대한 선호가 결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예컨대, 면세채권과 과세채권의 수익률이 각각 7%와 10%일 경우 한계세율이 30%보다 낮은 납세자는 과세채권에 투자하고¹⁶⁾ 한계세율이 30%보다 높은 납세자는 면세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즉, 암묵적 세율은 투자자에 관계없이 일정하지만 명시적

세율(한계세율)은 투자자별로 다르기 때문에 개별 투자자는 자산의 종류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명시적 세율과 암묵적 세율을 비교하여 세후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의 금융소득이 원천징수세율로 분리과세됨으로써 과세문제가 종결되기 때문에(즉, 납세자별 한계세율이 대부분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의 고객효과가 명확하게 발생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¹⁷⁾ 그러나, 조세혜택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통해(즉, <표 8>의 소득공제를 통해) 금융소득 자체에 대한 세금 이외에 다른 종합소득(대부분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을 절감할 수 있고 종합소득에는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즉, 납세자별 한계세율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조세의 고객효과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3.2 조세의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

조세차익거래(tax arbitrage)는 세금특성이 다른 하나의 자산을 매수하고 다른 자산을 매도하여 순투자액=0 인 무위험투자를 하면서도 확실한 투자수익을 얻는 거래이다. 특히,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는 ① 고세율의 납세자는 조세혜택자산(tax-favored assets)을 매수하고 조세불리자산(tax-disfavored assets)을 매도하여 높은 명시적 세율 대신 낮은 암묵적 세율을 부담하고 ② 저세율의 납세자는 조

16) 예컨대, 한계세율이 20%인 납세자가 과세채권에 투자하면 8%의 세후수익율을 얻게 되어 면세채권의 수익률인 7%보다 1%가 더 높은 세후수익율을 얻게 된다. 이와 반대로 한계세율이 40%인 납세자가 과세채권에 투자하면 6%의 세후수익율을 얻게 되어 면세채권의 수익률인 7%보다 1% 더 낮은 세후수익율을 얻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납세자는 과세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고 상대적으로 세율이 높은 납세자는 면세채권에 투자하는 것이 유리하게 된다.

17) 다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한계세율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대부분 면세채권을 선호하는 조세의 고객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세불리자산을 매수하고 조세혜택자산을 매도하여 높은 암묵적 세율 대신 낮은 명시적 세율을 부담함으로써 무위험차익을 얻는 것을 의미한다. 세금특성을 이용한 이러한 무위험 차익거래는 시장마찰(market frictions)이나 과세당국의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무런 제약 없이 발생하게 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는 소득공제를 통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과누진세율¹⁸⁾ 하에서 납세자별 한계세율의 차이로 인해 조세의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 근로자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매우 작기 때문에 동(同)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을 거의 감소시키지 못할 수 있다.¹⁹⁾ 반대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는 소득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금융상품에 최대한 불입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을 거의 감소시키지 못하는 저소득 근로자는 동(同)금융상품을 거의 선택하지 않는 반면 동(同)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가 동(同)금융상품에 주로 투자

함으로써 (즉, 동(同)금융상품으로 인한 암묵적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조세차익거래를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물론, 시장마찰이나 세법상 규제를 통해 동(同)조세차익거래의 발생이 다소 감소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제약이 충분하지 않는 경우(이러한 제약 하에서도 무위험차익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으로 볼 수 있다.

3.3 시장마찰(Market Frictions)과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

시장마찰(market frictions)은 시장의 거래비용이나 다른 제약들로 인해 세전수익률이 감소해서 차익거래의 기회가 줄어드는 것으로, 시장이 조세혜택 자산에 대하여 더 낮은 수익률을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는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세법에서 규정하는 다양한 제도이다.

시장마찰과 세법상 규제는 모두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서로 대체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장마찰이 축소되거나 제거되는 경우에는 새로운 세법상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다. 또한, 시장마찰이 없는 경우에는 세법상 규제만으로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18) 현행 소득세율은 (표 9)와 같다.

(표 9) 소득세율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8,800만원 초과
세율	6%	16%	25%	35%

19) 예컨대, 총급여가 2,000만원인 근로자는 부양가족이 없고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975만원의 근로소득공제, 150만원의 기본공제, 90만원(2,000만원×4.5%)의 연금보험료공제, 100만원의 표준공제를 적용한 후 계산된 685만원의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면 41만1,000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되고 동(同)산출세액에 근로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결정세액은 18만4,950원에 불과하게 된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거나 다른 항목별 공제를 적용하는 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결정세액이 매우 작아지기 때문에 (실제로, 2009년 국세통계연보에 의하면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평균 결정세액은 18,478원이다.)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의 유인은 거의 없어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Scholes et al.(2009), 이준규·김갑순(2005)).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러한 시장마찰과 세법상 규제를 통해 전술한 금융상품의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기회가 효율적으로 차단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예컨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에는 시장마찰은 소득공제로 인해 낮아진 세전이자율이므로 세법상 규제는 <표 1>의 가입요건이나 <표 4>의 해지추정세액 및 이자소득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들의 효과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분석하기로 한다.

3.4 장기주택마련저축을 이용한 이론적 분석

전술한 바와 같이 시장마찰과 세법상 규제는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시장마찰이나 세법상 규제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동(同)조세차익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장기주택마련저축을 대상으로 이를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먼저 조세차익거래의 발생가능성과 관련하여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를 통해 세금부담을 충분히 감소시킬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가 동(同)금융상품에 주로 투자할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납세자의 한계세율에 따라 소득공제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공제액 = (불입금액

$\times 40\%) \times$ 한계세율) 소득수준에 따라 <표 9>의 소득세율의 편차가 소득공제액에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시장마찰이 작기 때문에 조세차익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소득공제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세전이자율이 충분히 낮아지는 경우에는 상당한 시장마찰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중은행들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안정적인 장기예수금을 유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예금이나 적금에 비해 가입자들에게 높은 이자율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할 있는데, 이를 통해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마찰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20) 21)} 즉, 수요자들간의 경쟁으로 조세혜택자산의 세전수익률이 낮아지는 암묵적 조세(implicit tax)의 효과가 공급자들간의 경쟁으로 구축(crowding-out)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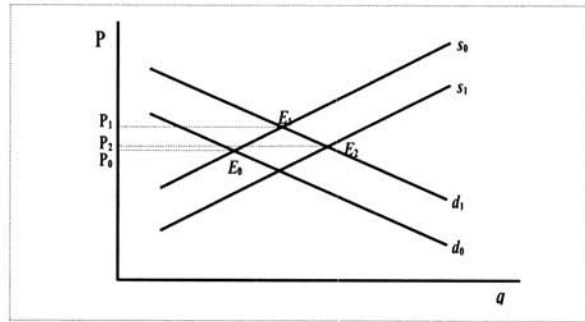
조세혜택자산에 대하여 암묵적 조세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고 결과적으로 시장마찰도 없는 것은 <그림 1>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에서 d_0 와 s_0 는 일반저축의 수요곡선과 공급곡선으로 E_0 가 균형점이고 P_0 가 균형이자율이다. 일반저축과 다른 조건들은 동일하면서 (ceteris paribus) 조세혜택(소득공제)만 제공하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의

20) 예컨대, 시중은행인 A은행의 2010.3.11.자 금리표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함께 동(同)저축을 제외한 가장 높은 이자율을 비교하면 <표 10>과 같다(물론 만기의 차이는 있지만 <표 4>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지추정세액이 없고 이자소득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상호부금과 거의 같은 특성의 금융상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0>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일반적인 예금 및 적금의 이자율 비교

상품	장기주택마련저축	상호부금	특판적금
만기	7년 이상	5년	3년
이자율	3.8%	3.3%	3.8%

21) 이 밖에 장기주택마련저축에는 신용카드 사용이나 급여이체 등에 따른 추가적인 가산금리가 적용되기도 하였다. 예컨대, 시중은행인 H은행은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불입금액을 초과할 경우에는 0.3%-0.6%의 가산금리를 제공하였다.



(그림 1) 시장마찰로 인한 암묵적 조세의 효과

경우 조세혜택으로 인해 저축상품의 수요가 d_0 에서 d_1 으로 증가하여 E_1 이 균형점이 되고 그 결과 균형이자율은 P_1 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P_1 은 P_0 와 상당한 차이가 있게 된다. 그러나, 공급자인 은행의 입장에서도 동(同)저축에 대한 조세혜택으로 인해 자발적인 가입자가 증가하여 새로운 고객이 창출되고 일반예금보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장기예수금이므로 적극적으로 공급을 확대하게 된다. 따라서 저축상품의 공급도 s_0 에서 s_1 으로 증가하게 되어서 E_2 가 균형점이 될 수 있다. 즉, 동(同)저축의 시장이 팽창할 수 있는 환경에서는 조세혜택에 따른 수요증가로 인한 암묵적 조세의 효과가 공급 증가를 통하여 상쇄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실제 현실과 같이 이론적으로도 은행이 제공하는 이자율은 조세혜택 전(P_0)과 후(P_2)에 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세법상 규제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조세차익거래를 효율적으로 방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4>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저축기간이 7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어 소득공제와 함께 조세혜택이 증폭되기 때문에 조세차익거래의 발생가능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²²⁾ 또한, <표 1>의 가입요건은 급여수준과 관계없이 주택보유 및 세대주 여부에 따라 판단했고,²³⁾ <표 4>의 해지추징세액도 불입기간 동안의 소득공제를 통한 세금부담의 감소액은 고려하지 않고 불입금액의 일정비율을 추정했기 때문에 고소득 근로자에게는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22) 예컨대, 이자소득세의 비과세는 4.23%의 세후이자율을 5%로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therefore 5\% \times (1 - 0.154) = 4.23\%$).

23) 예컨대, 가입시 소득요건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각각 1억원인 2주택 보유자는 가입대상에서 제외되고 전세금이 4억원인 무주택보유자는 가입이 가능하였다. 이런 점에서 2010년부터 총급여가 8,8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에게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제한한 것은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세법상 규제를 강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IV.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이론적 분석

이번 장에서는 이전 장에서 논의한 금융상품의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실현가능성을 수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하기로 한다.

4.1 장기주택마련저축의²⁴⁾ 분석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하여 우선 세법상 규제가 없는 상황을 가정한 기본적 분석을 한 후 동(同)규제가 적용될 경우로 분석을 확장하기로 한다.

4.1.1 기본적 분석

분석의 편의를 위해 아래의 분석에서는 <표 11>의 가정을 채택하기로 한다.

먼저 동일한 불입기간 이후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일반저축의 원리금 합계액을 비교하면 식(1)과 같다.

$$\begin{aligned}
 & [S(1+R_S)\left\{\frac{(1+R_S)^N-1}{R_S}\right\} + \\
 & Sdt_M\left\{\frac{(1+R_C)^N-1}{R_C}\right\}(1-t_w) + Sdt_MNt_w] > \\
 & [S(1+R_C)\left\{\frac{(1+R_C)^N-1}{R_C}\right\}(1-t_w) + SNt_w] \quad (1)
 \end{aligned}$$

<표 11>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기본적 분석을 위한 가정

- ① 소득공제와 함께 이자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하기 위한 기간요건을 만족하고 (저축기간)7년) 그 결과 해약추정세액도 없다.
- 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다른 금융상품에는 가입하지 않았다(따라서, <표 7>의 합산한도는 적용되지 않는다.).

24) <표 8>의 금융상품에서 청약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분석은 장기주택마련저축과 큰 차이가 없다. 즉, 장기주택마련저축과 비교할 때 이자소득세의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해지추정세액이 단순한 차이점 외에는 기본적인 구조는 동일하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도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유사한데 동(同)분석은 지면관계상 생략하기로 한다.

- S : 매년불입금액 (≤1,200만원)
- t_M : 가입자의 한계세율
- R_S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율
- R_C : 일반저축의 세전이자율
- d :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율 (40%)
- N : 불입기간
- t_w : 일반저축과 연금저축 이자에 대한 한계세율 (은행 세법상 일반적인 분리과세세율인 15.4%)

식(1)에서 좌변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매년 S씩 불입하면서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되고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의 만기시점인 N년 이후의 원리금 합계이고 우변은 일반저축에 매년 S씩 불입한 경우의 만기시점인 N년 이후의 원리금 합계인데, 식(1)과 같은 대소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경우는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는 무위험차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1)의 좌변의 첫 번째 항은 N년 동안 매년 초에 S씩 불입하고 각 불입금액에 매년 R_S의 이자가 발생하는 경우 만기시점인 N년 말의 원리금 합계액이다. 즉, S(1+R_S)^N+S(1+R_S)^{N-1}+...+S(1+R_S) = S(1+R_S)[{(1+R_S)^N-1]÷[(1+R_S)-1] = S(1+R_S)[{(1+R_S)^N-1]+R_S]이다. 식(1)의 좌변의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매년 초의 불입액 S에 대해 매년 말 Sd의 소득공제를 적용한 결과 환급받은 Sdt_M을 매년 R_C의 이자를 지급하

는 일반저축에 가입하고 동(同)일반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t_w 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만기시점인 N 년 말의 원리금 합계액이다. 즉, N 년 말에 t_w 의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원리금 합계액은 $Sdt_M(1+R_C)^{N-1} + Sdt_M(1+R_C)^{N-2} + \dots + Sdt_M = Sdt_M \{((1+R_C)^N - 1) \div (1+R_C) - 1\} = Sdt_M \{((1+R_C)^N - 1) \div R_C\}$ 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은 $\{Sdt_M \{((1+R_C)^N - 1) \div R_C\} - Sdt_M N\} t_w$ 이므로 $Sdt_M \{((1+R_C)^N - 1) \div R_C\} - Sdt_M N\} t_w = Sdt_M \{((1+R_C)^N - 1) \div R_C\} (1 - t_w) + Sdt_M N t_w$ 이다. 식(1)의 우변은 R_C 의 이자를 지급하는 일반저축에 매년 S 씩 불입하고 동(同)일반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t_w 의 세율로 과세할 경우 만기시점인 N 년 말의 원리금 합계액이다. 즉, N 년 말에 t_w 의 세율을 적용하기 전의 원리금 합계액은 $S(1+R_C)^N + S(1+R_C)^{N-1} + \dots + S(1+R_C) = S(1+R_C) \{((1+R_C)^N - 1) \div (1+R_C) - 1\} = S(1+R_C) \{((1+R_C)^N - 1) \div R_C\}$ 이고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담액은 $\{S(1+R_C) \{((1+R_C)^N - 1) \div R_C\} - SN\} t_w$ 이므로 $S(1+R_C) \{((1+R_C)^N - 1) \div R_C\} - \{S(1+R_C) \{((1+R_C)^N - 1) \div R_C\} - SN\} t_w = S(1+R_C) \{((1+R_C)^N - 1) \div R_C\} (1 - t_w) + SN t_w$ 이다.

식 (1)는 아래의 과정에 따라 식(2)로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 (1+R_S) \left\{ \frac{(1+R_S)^N - 1}{R_S} \right\} > \\ & \left\{ (1+R_C) \left\{ \frac{(1+R_C)^N - 1}{R_C} \right\} (1-t_w) \right. \\ & \left. - dt_M \left\{ \frac{(1+R_C)^N - 1}{R_C} \right\} (1-t_w) + Nt_w(1-dt_M) \right\} \end{aligned}$$

$$\begin{aligned} & \frac{R_C}{R_S} \left\{ \frac{(1+R_S)^N - 1}{(1+R_C)^N - 1} \right\} > \\ & \left\{ \left(\frac{1+R_C}{1+R_S} \right) (1-t_w) - \left(\frac{dt_M}{1+R_S} \right) (1-t_w) \right. \\ & \left. + Nt_w \left(\frac{R_C}{1+R_S} \right) \left\{ \frac{1-dt_M}{(1+R_C)^N - 1} \right\} \right\} \\ & \left\{ \frac{(1+R_S)^{N-1} + \dots + 1}{(1+R_C)^{N-1} + \dots + 1} \right\} > \\ & \left\{ \left(\frac{1+R_C - dt_M}{1+R_S} \right) (1-t_w) \right. \\ & \left. + \left\{ \frac{N}{(1+R_C)^{N-1} + \dots + 1} \right\} \left(\frac{1-dt_M}{1+R_S} \right) t_w \right\} \quad (2) \end{aligned}$$

<그림 1>을 이용한 분석 및 <표 10>과 같이 암묵적 조세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일반저축의 이자율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R_S \div R_C$) 식(2)의 좌변은 1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식(2)의 우변은 개념상 $\left(\frac{1+R_C - dt_M}{1+R_S} \right)$

(a)와 $\left\{ \left(\frac{N}{(1+R_C)^{N-1} + \dots + 1} \right) \left(\frac{1-dt_M}{1+R_S} \right) \right\}$ (b)를 $t_w \cdot (1-t_w)$ 의 비율로 안배계산한 값이므로 계산한 결과도 a와 b 사이의 값이 된다. 여기서 a는 1보다 작고 b도 $\left\{ \frac{N}{(1+R_C)^{N-1} + \dots + 1} \right\}$ (c)와 $\left(\frac{1-dt_M}{1+R_S} \right)$ (d)가 모두 1보다 작아서 c와 d를 곱한 값도 1보다 작아지게 된다. 결과적으로 우변의 값은 1보다 작은 a와 b 사이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1보다 작아지고 식(2)는 t_w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게 된다. 즉, 세법상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는 무위험차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1.2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를 고려한 분석

이번 절에서는 기본적 분석에 (표 4)의 세법상 규제(해지추징세액 및 이자소득세 과세)를 적용할 경우에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는지 여부를 분석하기로 한다. (표 4)와 같이 해지추징세액과 이자소득세 과세가 적용되는 저축기간은 다르지만 두 가지 세법상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5년 이하의 저축기간을 ($N \leq 5$) 대상으로 분석하기로 한다.²⁵⁾

먼저, 세법상 규제 하에서 ($N \leq 5$) 동일한 불입 기간 이후의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일반저축의 원리금 합계액을 비교하면 식(3)과 같다.

$$\begin{aligned}
 & S(1+R_S)\left\{\frac{(1+R_S)^N-1}{R_S}\right\}(1-t_w) \\
 & + SNt_w + Sdt_M\left\{\frac{(1+R_C)^N-1}{R_C}\right\}(1-t_w) \\
 & + Sdt_MNt_w - SNP(N) > \\
 & S(1+R_C)\left\{\frac{(1+R_C)^N-1}{R_C}\right\}(1-t_w) + SMt_w
 \end{aligned} \tag{3}$$

P(N) : 해지추징율 ($N \leq 1$ 이면 8%, $2(N \leq 5$ 이면 4%)

식(3)의 우변은 식(1)과 동일하고, 식(3)의 좌변의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은 R_C 대신 R_S 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장기주택마련저축도 일반저축과 같이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을 반영하였다. 또한, 식(3)의 좌변의 세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은 식(1)과 동일하고, 다섯 번째 항은 해지추징세액이다. 식(3)의 대소관계가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경우

에는 세법상 규제 하에서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소득공제를 충분히 적용받을 수 있는 고소득 근로자는 무위험차익을 얻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식(3)은 앞선 절과 비슷한 방식으로 식(4)로 정리할 수 있다.

$$\begin{aligned}
 & (1+R_S)\left\{\frac{(1+R_S)^N-1}{R_S}\right\}(1-t_w) > \\
 & (1+R_C-dt_M)\left\{\frac{(1+R_C)^N-1}{R_C}\right\}(1-t_w) \\
 & - dt_MNt_w + NP(N) \\
 & \left(\frac{R_C}{R_S}\right)\left\{\frac{(1+R_S)^N-1}{(1+R_C)^N-1}\right\} > \\
 & \left(\frac{1+R_C-dt_M}{1+R_S}\right) - N\left(\frac{R_C}{1+R_S}\right)\left\{\frac{dt_Mt_w-P(N)}{(1+R_C)^N-1}\right\} \\
 & \left\{\frac{(1+R_S)^{N-1}+\dots+1}{(1+R_C)^{N-1}+\dots+1}\right\} > \\
 & \left(\frac{1}{1+R_S}\right)[(1+R_C-dt_M) \\
 & + N\left\{\frac{P(N)-dt_Mt_w}{(1+R_C)^{N-1}+\dots+1}\right\}]\left(\frac{1}{1-t_w}\right) \\
 & \left\{\frac{(1+R_S)^{N-1}+\dots+1}{(1+R_C)^{N-1}+\dots+1}\right\} > \\
 & \left(\frac{1+R_C-dt_M}{1+R_S}\right) \\
 & + \left(\frac{1}{1+R_S}\right)\left\{\frac{N}{(1+R_C)^{N-1}+\dots+1}\right\} \\
 & \left\{P(N)\left(\frac{1}{1-t_w}\right) - dt_M\left(\frac{t_w}{1-t_w}\right)\right\}
 \end{aligned} \tag{4}$$

진술한 바와 같이 $R_S \div R_C$ 이므로 식(4)의 좌변은 1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식(4)의 우변의 첫 번째 항인 $\left(\frac{1+R_C-dt_M}{1+R_S}\right)$ 은 1보다 작고 한계세율

25) 5년 이하의 저축기간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이자소득세 과세의 세법상 규제만 적용되는 5년 초과 7년 이하의 저축기간에도 ($5(N \leq 7)$) 역시 무위험차익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_M)이 커질수록 더욱 작아진다. 식(4)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은 $(\frac{1}{1+R_S})(\textcircled{a})$, $\{\frac{N}{(1+R_C)^{N-1}+\dots+1}\}$ (㉔) 및 $\{P(N)(\frac{1}{1-t_w})-dt_M(\frac{t_w}{1-t_w})\}$ (㉕) 으로 구성되는데 ㉔와 ㉕는 항상 1보다 작고 ㉕는 P(N)과 dt_M 의 대소관계에 따라 $P(N)>dt_M$ 인 경우에는 P(N)보다 크게 되고 $P(N)<dt_M$ 인 경우에는 P(N)보다 작게 된다(즉, ㉕) $P(N)>dt_M$ 또는 ㉕ $P(N)<dt_M$ 가 성립). 여기서 높은 한계세율로 인해 P(N) $<dt_M$ 인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㉕가 P(N)의 값인 0.04나 0.08보다 작게 되고 그 값에 다시 1보다 작은 ㉔와 ㉕를 곱하면 식(4)의 우변의 두 번째 항은 0에 가까운 값을 가지게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식(2)와 같이 t_M 의 값에 관계없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규제 하에서도 t_M 의 값이 커지면 식(4)가 성립하여 무위험차익을 얻을 가능성이 커지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4.1.3 국제통계연보의 자료를 통한 무위험차익거래의 확인

이상의 분석과 같이 세법상 규제가 존재하는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더라도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의 경우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을 통해 무위험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1>과 같이 국제통계연보의 자료를 정리하면 예상과 같이 중산서민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취지와는 비교적 무관하게 고소득 근로자의 불입액이 저소득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이를 통한 절세효과도 훨씬 큰 것을(즉, 전술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²⁶⁾

<표 11>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단위: 명·원)

총급여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소득공제	1인당 유효세율 ²⁷⁾	1인당 절세효과 ²⁸⁾
2,000만원 이하	66,788	426,214	0.98%	1,668
4,000만원 이하	514,517	733,309	1.33%	3,911
6,000만원 이하	419,499	1,247,707	3.20%	15,970
8,000만원 이하	191,653	1,689,157	5.75%	38,872
1억원 이하	72,224	1,955,181	8.14%	63,675
3억원 이하	41,225	2,133,390	18.57%	158,503
3억원 초과	1,046	2,471,319	27.88%	275,649
합계	1,458,911	2,154,264		

* 자료: 2010년 국제통계연보²⁹⁾

26) 고소득층의 불입액이 상대적으로 큰 것은 조세해택을 고려하지 않더라도 가처분소득이 훨씬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소득공제의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게 불필요한 조세해택을 제공하는 문제점은 여전히 존재하게 된다.

27) 국제통계연보에서 제시한 총급여 구간별 (결정세액·총급여)의 비율이다.

28) 1인당 절세효과 = 1인당 소득공제×40%×유효세율로 계산하였다.

29) 국제통계연보의 자료에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를 합산하여 공개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분석할 수는 없지만 (표 5)와 같이 청약저축의 소득공제는 한도는 연 4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금액은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소득공제로 볼 수 있다. 또한, 절세효과에는 이자소득세의 비과세 효과를 구분할 수 없는 문제점도 있다.

4.2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분석

이번 절에서는 주택보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수학적 분석을 하기로 한다.³⁰⁾ <표 6>과 같이 동(同)소득공제는 장기주택마련저축과는 다르게 소득공제 이후의 별도의 세법상 규제는 없으며 기본적 분석만을 하기로 한다.

먼저 주택보유자가 동일한 대출금액으로 적용받을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의 소득공제를 통한 연도별 절세효과와 동(同)차입금으로 인한 추가적인 연도별 순금융비용을 비교하면 식(5)와 같다.³¹⁾

$$LR_{D,M} > LR_D - LR_C(1 - t_w) \quad (5)$$

L : 대출금액

R₀ : 대출이자율 (L×R₀ ≤ 1,000만원)

즉, 식(5)에서 좌변은 L의 대출금액을 통한 LR_D의 대출이자로 인한 절세효과이고 우변은 대출이자에서 대출금액을 통한 예금이자를 차감한 순금융비용이다. 따라서, 대출금액을 통한 절세효과가 순금융비용보다 큰 식(5)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차익거래가 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식(5)는 식(6)으로 정리할 수 있다.

$$t_M > 1 - \frac{R_C}{R_D}(1 - t_w) \quad (6)$$

전술한 바와 같이 현행 세법상 일반저축에 대한 한계세율(t_w)로 대부분 분리과세세율인 15.4%가 적용되기 때문에 식(6)의 우변은 대부분 상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을 보유한 납세자의 한계세율(t_M)이 식(6)을 만족할 정도로 충분히 큰 경우에는 대출금액을 통해 무위험차익을 얻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는 <표 8>과 같이 금융상품의 세제지원 중에서 공제한도가 가장 크기 때문에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 근로자가 무위험차익을 가장 크게 얻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2>와 같이 국제통계연보의 자료를 정리하면 예상과 같이 서민·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의 취지와는 비교적 무관하게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저소득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이를 통한 절세효과도 훨씬 큰 것을 (즉, 전술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³²⁾

4.3 연금저축의 분석

이번 절에서는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 중 마지막으로 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대상으로 수학적 분석을 하기로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同)소득공제에는 ①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가입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불입액의

30) <표 6>과 같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월세 소득공제도 주택관련 차입금 지원규정으로 시행되고 있지만 동(同)소득공제들은 무주택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한계세율로 인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동(同)소득공제들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되 다음 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서 추가적으로 논의하기로 한다.

31) 차입금의 경우에는 매년 상환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장기주택마련저축의 경우와 같이 불입기간(N년) 동안의 원리금을 비교하는 대신 연도별 절세효과와 순금융비용을 비교하였다.

32) 전술한 바와 같이 주택임차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무주택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높은 한계세율로 인한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득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대신 의도적으로 차입함으로써 무위험차익을 얻을 가능성은 있다. 실제 국제통계연보의 자료를 정리한 <표 13>과 같이 동(同)소득공제의 경우에도 고소득 근로자의 소득공제액이 저소득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2) 정기주택저당차입금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단위: 명·원)

총급여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소득공제	1인당 유효세율	1인당 절세효과
2,000만원 이하	10,353	1,099,391	0.98%	10,759
4,000만원 이하	205,613	2,308,774	1.33%	30,785
6,000만원 이하	268,656	3,061,011	3.20%	97,949
8,000만원 이하	118,050	3,332,427	5.75%	191,722
1억원 이하	36,019	3,829,590	8.14%	311,799
3억원 이하	15,568	4,497,233	18.57%	835,318
3억원 초과	236	5,845,343	27.88%	1,629,963
합계	654,495	2,921,190		

* 자료: 2010년 국제통계연보

2%를 해지가산세로 추정하고 ② 연금저축의 가입자가 계약기간 경과 전에 해지하거나 경과 후에 연금 외의 형태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으로 과세하는 세법상 규제가 있는데 이하에서는 기본적인 분석은 생략하고 세법상 규제를 고려한 분석만을 하기로 한다.

먼저 동일한 불입기간 이후의 연금저축과 일반저축의 원리금 합계액을 비교하면 식(7)과 같다.

$$S(1 + R_p) \left\{ \frac{(1 + R_p)^N - 1}{R_p} \right\} (1 - t_w) (1 - F(N)) + S_M \left\{ \frac{(1 + R_c)^N - 1}{R_c} \right\} (1 - t_w)$$

$$+ S_M t_w - S_{NC}(N) >$$

$$S(1 + R_c) \left\{ \frac{(1 + R_c)^N - 1}{R_c} \right\} (1 - t_w) + S_M t_w \quad (7)$$

S : 매년불입금액 (≤300만원)

R_p : 연금저축의 이자율

F(N) : 연금저축의 해지시 기타소득세와 가산세의 추정비용 (N>5 이면 0)

C(N) : 보험회사의 사업비 공제율 (해약환급금의 사업비로 인한 손실)

식(7)은 앞선 결과 비슷한 방식으로 식(8)로 정리할 수 있다.

(표 13) 주택임차차입금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단위: 명·원)

총급여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소득공제	1인당 유효세율	1인당 절세효과
2천만원 이하	1,587	521,109	0.98%	2,040
4천만원 이하	19,197	779,497	1.33%	4,157
6천만원 이하	10,536	1,057,612	3.20%	13,537
8천만원 이하	3,019	1,230,209	5.75%	28,311
1억원 이하	753	1,322,709	8.14%	43,077
3억원 이하	360	1,675,000	18.57%	124,446
3억원 초과	10	2,100,000	27.88%	234,232
합계	35,462	909,932		

$$\begin{aligned}
& \left(\frac{R_C}{R_P}\right)\left\{\frac{(1+R_P)^N-1}{(1+R_C)^N-1}\right\}(1-F(N)) > \\
& \left(\frac{1+R_C}{1+R_P}\right)+\left(\frac{NR_C}{1+R_P}\right)\left\{\frac{C(N)-t_w(1-t_M)}{(1+R_C)^N-1}\right\} \\
& \left(\frac{1}{1-t_w}\right)-\left(\frac{t_M}{1+R_P}\right) \\
& \left(\frac{R_C}{R_P}\right)\left\{\frac{(1+R_P)^N-1}{(1+R_C)^N-1}\right\}(1-F(N)) > \\
& \left(\frac{1+R_C-t_M}{1+R_P}\right)+\left\{\frac{C(N)-t_w(1-t_M)}{1+R_P}\right\} \\
& \left\{\frac{N}{(1+R_C)^{N-1}+\dots+1}\right\}\left(\frac{1}{1-t_w}\right) \\
& \left(\frac{R_C}{R_P}\right)\left\{\frac{(1+R_P)^N-1}{(1+R_C)^N-1}\right\}(1-F(N)) > \\
& \left(\frac{1}{1+R_P}\right)[1+R_C-t_M+\{C(N)-t_w(1-t_M)\}] \\
& \left\{\frac{N}{(1+R_C)^{N-1}+\dots+1}\right\}\left(\frac{1}{1-t_w}\right) \\
& \left\{\frac{(1+R_P)^{N-1}+\dots+1}{(1+R_C)^{N-1}+\dots+1}\right\}(1-F(N)) > \\
& \left(\frac{1}{1+R_P}\right)[R_C+(t_w-t_M)+\left(\frac{1}{1-t_w}\right)](1-t_w)^2 \\
& +\{C(N)-t_w(1-t_M)\}\left\{\frac{N}{(1+R_C)^{N-1}+\dots+1}\right\} \\
& (8)
\end{aligned}$$

식(8)이 성립하는 경우에는 고소득 근로자는 무위험차익을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금저축에 5년 이상 장기간 불입할 경우에는 $(N>5)$ $F(N)=0$ 이므로 식(8)의 좌변에서 1과 거의 같은 값을 가지게 된다. 식(8)의 우변에서 $\{R_C+(t_w-t_M)\}$ 은 한계세율(t_M)이 커질수록 작아지게 되고 $\left\{\frac{N}{(1+R_C)^{N-1}+\dots+1}\right\}$ 은 1보다 작고 $\{C(N)-t_w(1-t_M)\}$ 은 대부분 0에 가깝거나 0보다 작기 때문에 특히 한계세율(t_M)이 큰 경우에는 우변의 값은 $\left(\frac{1}{1+R_P}\right)$ 을 곱하기 전에 이미 대부분 1보다 작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보험상품의 사업비($C(N)$)와 같은 시장마찰이나 중도해지시 추정되는 기타소득세나 가산세($F(N)$)와 같은 세법상 규제로 인해 항상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계세율(t_M)이 큰 납세자는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통해 충분한 무위험차익을 얻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표 14〉와 같이 국제통계연보의 자료를 정리하면 예상과 같이 저소득층의 노후준비를 충실하게 지원하기 위한 연금저축의 소득공제의 취지와는 비교적 무관하게 고소득층의 소득공제액이 저소득층

〈표 14〉 연금저축의 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

(단위: 명·원)

총급여	소득공제 인원	1인당 소득공제	1인당 유효세율	1인당 절세효과
2,000만원 이하	22,528	992,054	0.98%	9,709
4,000만원 이하	332,809	1,682,647	1.33%	22,436
6,000만원 이하	516,382	2,151,719	3.20%	68,853
8,000만원 이하	336,528	2,370,584	5.75%	136,385
1억원 이하	142,289	2,531,348	8.14%	206,098
3억원 이하	103,941	2,682,341	18.57%	498,219
3억원 초과	4,434	2,742,597	27.88%	764,768
합계	1,458,911	2,154,264		

* 자료: 2010년 국제통계연보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고 이를 통한 절세효과도 훨씬 큰 것을 (즉, 전술한 이론적 분석의 결과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4 개별 소득공제의 효과 비교

〈표 11〉, 〈표 12〉, 〈표 13〉 및 〈표 14〉로 정리한 개별 소득공제의 총급여 수준별 절세효과는 〈그림 2〉, 〈그림 3〉 및 〈그림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2〉와 같이 소득공제인원은 연금저축과 장기주택마련저축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나 주택임차차입금보다 크지만 총급여가 2,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은 모든 소득공제를 거의 적용받지 못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총급여 4,0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장기주택저당차입금과 연금저축은 총급여 6,000만원 이하의 납세자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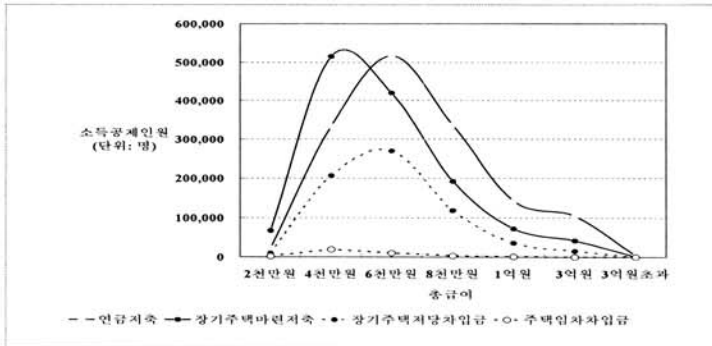
〈그림 3〉과 〈그림 4〉에서는 1인당 소득공제액 및 1인당 절세효과가 모두 고소득층일수록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소득공제의 한도가 가장 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1인당 소득공제액과 1인당 절세효과가 나머지 소득공제들에 비해 훨씬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V. 금융상품 세제지원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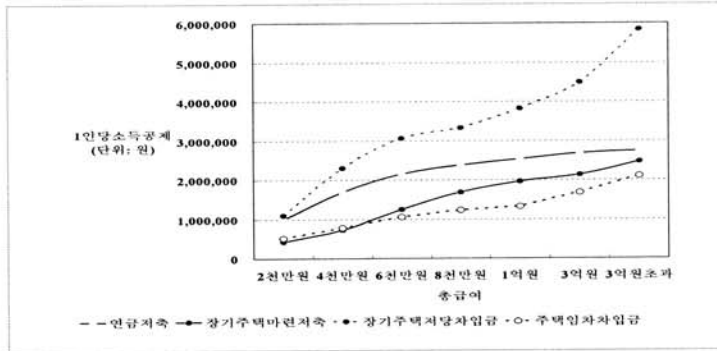
이번 장에서는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한 조세차익거래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소득공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5.1 소득공제 방식의 금융상품 세제지원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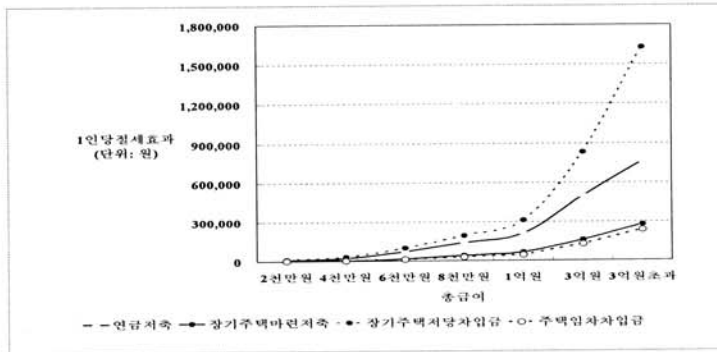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거주자에 대한 조세혜택



〈그림 2〉 소득공제인원



〈그림 3〉 1인당소득공제액



〈그림 4〉 1인당절세효과

은 크게 비과세 및 소득공제(과세표준 이전 단계)와 세액공제(과세표준 이후 단계)의 두 단계로 구분할 수 있는데 <표 8>과 같이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은 대부분 소득공제의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소득공제 방식의 조세혜택은 납세자의 한계세율

이 커질수록 이를 통한 절세효과도 커지므로 특히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조세부담을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 의료비나 교육비 등과 같은 일반적인 소비성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는 지출액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원본이 상실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해 조세부담이 감소하더라도 조세차익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³³⁾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본이 상실되지 않기 때문에 진술한 분석의 결과와 같이 납세자의 한계세율이 충분히 높은 경우에는 무취헌차익거래를 얻을 수 있고 납세자들도 조세차익거래만을 목적으로 금융상품을 취득할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대부분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상품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득공제 대신 Phase-Out 규정이나³⁴⁾ ³⁵⁾ 세액공제의³⁶⁾ 방법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이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2 불입금액 기준 세법상 규제의 문제점

금융상품 세제지원의 두 번째 문제점은 세법상 규제가 소득공제를 통한 조세혜택과 무관하게 모두 불입금액 기준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즉, <표 4> 및 <표 5>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추징세액은 불입금액의 일정비율로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납세자의 조세혜택이 소득공제에 한계세율을 곱한 금액인 반면 동(同)조세혜택에 대한 세법상 규제는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금융상품의 세제지원이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해지추징세액과 같은 세법상 규제도 조세혜택과 마찬가지로 납세자의

33) 예컨대, 교육비 공제를 통해 종합소득세 부담을 줄일 수는 있지만 원본의 손실인 교육비 지출을 고려하면 동(同)소득공제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는 없다.

34) Phase-Out 규정은 임금피크제와 유사하게 소득 등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마다 소득공제의 비율을 제감시키는 것인데,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의 소득공제로 인한 조세혜택을 제한하게 된다.

35) 예컨대, 미국의 내국세입법(Internal Revenue Code, IRC)은 개인퇴직연금(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불입액에 대하여 <표 15>와 같이 개인소득세의 신고방법(filing status)에 따라 공제한도를 차등화하여(Phase-Out) 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또한 일본의 소득세법은 연금저축의 불입액에 따라 <표 16>과 같이 공제비율을 차등화하여(Phase-Out) 동(同)불입액이 증가할수록 공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축소시키고 있다.

<표 15> 개인소득세 신고방법에 따른 IRA 불입액에 대한 공제금액 한도 (IRC Section 219)

독신자	AGI	\$0~\$53,000	\$53,000~\$63,000	\$63,000 이상
	공제한도	\$5,000	\$5,000 - (AGI - \$53,000) × 50%	\$0
합산신고 기준자	AGI	\$0~\$85,000	\$85,000~\$105,000	\$105,000 이상
	공제한도	\$10,000	\$10,000 - (AGI - \$85,000) × 50%	\$0
개별신고 기준자	AGI	\$0~\$169,000		\$169,000 이상
	공제한도	\$5,000 - (AGI - \$169,000) × 2.96%		\$0

<표 16> 불입금액에 따른 소득공제금액 (일본소득세법 제76조 제2항)

불입금액	공제금액
¥0~¥25,000	전 액 (= 불입금액 × 100%)
¥25,000~¥50,000	¥25,000 + (불입금액 - ¥25,000) × 50%
¥50,000~¥100,000	¥37,500 + (불입금액 - ¥50,000) × 25%
¥100,000 이상	¥50,000 + 불입금액 × 0%

36) 동일한 세액공제가 적용되더라도 한계세율이 낮은 저소득층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소득공제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소득공제의 효과 = 세액공제 × 한계세율) 고소득층이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이다.

한계세율을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³⁷⁾

5.3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에 대한 세법상 규제 미비의 문제점

〈표 6〉과 같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 소득공제에 적용하는 별도의 세법상 규제는 없는데, 이것은 해지시 원리금에서 해지추징세액을 차감함으로써 쉽게 정수할 수 있는 저축상품과 다르게 동(同)차입금은 정수상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의 납세자의 경우에는 조세차익거래의 조건인 식(6)을 만족하지 않을 것으로 (즉, 조세차익거래라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과세당국이 예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계세율이 높으면 식(6)을 만족하는 경우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고³⁸⁾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의 소득공제는 주택보유자를 대상으로 하면서 공제한도가 매우 크기³⁹⁾ 때문에 고소득층에게 상당한 무위험차익을 제공할 수 있는 동(同)소득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을 것이다. 동(同)소득공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Phase-Out 규정을 적용하여 (또는 간접적으로 가입자들이 보유한 주택의 가액을 기준으로 Phase-Out 규정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이 얻을 수 있는 무위험차익을 제한하는 방법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4 월세 소득공제에 대한 과도한 세법상 규제의 문제점⁴⁰⁾

〈표 6〉의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각주 10)과 같이 ①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이고 ②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이고 ③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이면서 ④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임차인이라야 하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이들 중에서 ②와 ③은 지나치게 엄격하고 동(同)조건을 만족할 경우에는 동(同)소득공제를 통해 실제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도 제한적인 문제점이 있다. 예컨대, 국제통계연보에 의하면 총급여가 3,000만원인 근로자들의 유효세율은 4%인데⁴¹⁾ 소

37) 저소득층은 조세혜택에 비해 해지추징세액이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세법에서는 해지추징세액이 실제 획득한 세부담 감소액보다 큰 경우에는 동(同)감소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동(同)규정의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무상 빈번한 행정차이를 유발하고 있다. 예컨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해지하면서 실제 소득공제로 인한 세부담 감소액에 비해 해지추징세액이 큰 경우의 처리방법에 대해 2010.5.6.에 국제청 상담센터와 시중은행에 각각 문의한 결과 국제청 상담센터에서는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은행에 가져가면 환급받을 수 있지만 해당 시식은 없다고 답변한 반면 시중은행에서는 전년도 근로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이나 세무서의 확인서를 가져오면 환급이 가능하지만 환급세액의 계산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지 못한다고 답변하였다. 즉, 납세자가 구체적인 세무지식을 갖추고 있으면서 세무서 방문 및 영수증 보관의 불편을 감수해야 하고 시중은행의 업무처리도 미숙한 여러 문제점 때문에 세부담 감소액을 초과하는 해지추징세액을 환급받는데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저소득층의 해지추징세액을 제한하는 세법 규정을 실제 시행하는데 상당한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의 무관한 고소득층의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은 커진다고 할 수 있다.

38) 식(6)에서 대출이자율이 일반저축이자율의 k 배인 경우 (즉, $R_0 = kR_c$, $k > 1$) 식(6)은 식(9)와 같이 전환할 수 있는데 고소득층에서는 동(同)조건을 쉽게 만족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k < \frac{1 - t_H}{1 - t_M} \quad (9)$$

39) 동(同)소득공제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소득공제액 중에서 공제한도가 가장 크다.

40) 제4절부터 제6절까지 내용은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의 주된 분석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금융상품과 연계된 세법상 조항에 대한 분석이기 때문에 동시에 검토하기로 한다.

41) 결정세액 합계(577,188백만원) ÷ 과세표준 합계(14,737,183백만원)

득공제액은 월세금액의 40%이기 때문에 실제 동(同)소득공제의 절세효과는 지출한 월세금액의 1.6%에 불과하다. 또한, 동(同)소득공제를 위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을 요구함에 따라 임대인의 세원이 양성화되면 월세금액이 상승할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동(同)소득공제를 통한 절세효과보다 월세금액이 더 크게 증가하여 임차인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비율을 높이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총급여가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들 중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도 많고 이들 중 상당수는 비정규직을 포함한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부양가족의 요건을 삭제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에 비해 월세 소득공제에는 <표 7>의 합산한도가 적용되어 다른 소득공제들과의 중복으로 동(同)소득공제가 배제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에 적용되는 300만원의 합산한도는 주택보유자들에게 적용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공제한도인 1,000만원에 비해 매우 낮는데 낮은 합산한도로 인해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의 불입금액이 감소할 수도 있으므로 동(同)합산한도를 소득공제별 개별한도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5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제한된 세제지원의 문제점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폐지하는 대신 2010년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으나, <표 8>과 같이 공제한도가 300만원에서 48만원으

로 대폭 축소되었고 공제대상자도 무주택근로자로 한정했기 때문에 금융상품을 통한 세제지원이 축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세제지원의 축소는 최근의 감세정책 방향과는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요건을 폐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의 요건과 비슷하게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5.6 저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배제의 문제점

<표 8>과 같이 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제외하면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모두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저소득 자영업자들에 대한 세제지원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다. 다른 특별공제도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통한 금융상품 세제지원도 자영업자들에게는 배제하는 것이 타당할 수도 있지만 그 경우에도 <표 3>의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소득세 비교세와 같이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조세혜택은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추가적으로, 전술한 바와 같이 장기주택마련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2012년까지 폐지하더라도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는 존속시켜서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위한 저축유인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VI. 결론

본 연구는 Scholes et al.(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지원을 통한 고객효과에 의한 조세차익거래(clientele-based tax arbitrage)

의 가능성을 주택관련 저축 지원규정, 주택관련 차입금 지원규정 및 연금상품 지원규정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Scholes et al.(2009)에 의하면 시장마찰(market frictions)과 세법상 규제(tax rule restrictions)를 통해 조세차익거래를 방지할 수 있지만 본 연구의 분석결과 소득공제를 통한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상품 세제지원은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충분한 조세차익거래의 가능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들 세제지원이 당초 저소득층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인 것을 고려하면 당초 정책의도와는 반대로 세제지원을 통해 고소득층에게 무위험차익을 얻을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소득공제를 통한 현행 세제지원을 개선하기 위해 제시한 가능한 대안들은 아래와 같다.

- ① 소득공제 방식의 세제지원이 실제로는 고소득층의 재산증식수단으로 운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공제 대신 Phase-Out 규정이나 세액공제의 방법을 적용하여 고소득층이 금융상품 세제지원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절세효과를 제한해야 할 것이다.
- ② 납세자의 조세혜택이 한계세율에 따라 증가하는 반면 해지추징세액과 같은 세법상 규제는 한계세율을 반영하지 않은 불입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고소득층에게 유리하게 운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세법상 규제도 납세자의 한계세율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 ③ 주택보유자이면서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에게 무위험차익을 크게 제공할 수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의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해 소득 또는 주택가액을 기준으로 Phase-

Out 규정을 적용하여 동(同)무위험차익을 제한해야 할 것이다.

- ④ 지나치게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는 반면 절세효과는 제한적인 월세 소득공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의 비율을 높이고 부양가족 요건을 삭제하고 금융상품 세제지원에 대한 합산한도를 소득공제별 개별한도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 ⑤ 2012년까지 폐지되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신 신설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를 통한 세제지원이 축소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동(同)소득공제의 요건을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와 비슷하게 확대해야 할 것이다.
- ⑥ 대부분의 금융상품 세제지원에서 저소득 자영업자들이 배제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소득공제와는 무관한 이자소득 비과세의 조세혜택을 자영업자들에게도 적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세무회계와 조세전략 분야에서 선행연구가 부진했던 소득세제를 Scholes et al.(2009)의 논의를 바탕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행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개인의 세무계획과 과세당국의 조세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적 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의견들을 반영하여 본 연구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상의 개선방안들에 대한 논의를 통해 보다 나은 조세제도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국세청. 2010. 「국세통계연보」.
- 기획재정부. 2009. 「보도자료: 민생안정·미래도약을 위한 2009년 세제개편안 (2009.8.25.)」.
- 기획재정부. 2009. 「보도자료: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폐지에 따른 보완방안 (2009.9.15.)」.
- 이준규·김갑순. 2005.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주)영화조세통합.
- Scholes, M.S., M.A. Wolfson, M. Erickson, E.L. Maydew, and T. Shevlin. 2009. Taxes and Business Strategy - A Planning Approach. Pearson Prentice Hall.
- www.samili.com

Analysis on Clientele-Based Tax Arbitrage through Tax Preferences

Byung Wook Jun* · Boram Choi**

Abstract

This study theoretically and empirically analyzes the possibility for clientele-base tax arbitrage through tax preferences for various financial instruments. Although Scholes et al.(2009) argue that market frictions and tax rule restrictions hinder the tax arbitrage, analysis of this study shows that current tax preferences, most of which are tax deductions, leave enough room for the tax arbitrage, especially for high-income taxpayers. Considering those tax preferences are originally to help low-income tax payers' wealth creation, the government's tax policy goals are likely to be reversely realized by giving high-income taxpayers chance for arbitrage trade.

Based on the analysis, this study suggests practical plans to revise current tax preferences for financial instruments as follows.

First, the phase-out rule for tax deductions or tax credits should replace current tax preferences to restrict tax savings via financial instruments for high-income taxpayers.

Second, tax rule restrictions, imposed as rescission penalty tax, should reflect taxpayers' marginal tax rates because current restrictions, which only reflects accumulated payments, are disadvantageous for low-income taxpayers.

Third, tax deduction for long-term mortgage, which especially gives vast scope of tax arbitrage for high-income taxpayers, should adopt either income-based or property-based phase-out rule.

Fourth, tax deduction for monthly rents, which requires strict conditions while allowing trivial tax savings, should increase deduction ratio and remove the dependent requirement and be excluded from combined tax deductions limit for financial instruments.

* Assistant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Corresponding Author)

** Ph. D Student, Graduate School of Science in Taxation, University of Seoul (First Author)

Fifth, tax deduction for property subscription savings ('PSS' hereafter) should not be less generous than that for long-term property savings, which is replaced by PSS.

Last, tax preferences for financial instruments should be extended to low-income sole proprietors as well as employees.

Key words: Tax Preferences for Financial Instruments, Clientele-Based Tax Arbitrage, Market Frictions, Tax Rule Restrictions